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6196 배당이의

원 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원고보조참가인 [redacted]공제회

소송대리인 [redacted]

소송복대리인 [redacted]

피 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redacted]

2. [redacted]시

소송대리인 [redacted]

소송복대리인 [redacted]

변 론 종 결 2018. 7. 11.

판 결 선 고 2018. 8. 2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주 문

1. [redacted]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8. 작성한 별지1 배당표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원을 5,210,379,832원으로,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배당액 787,810,960원을 777,889,982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920,432,213원을 29,237,00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483,722,987원을 2,312,884,3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주식회사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10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redacted]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8. 작성한 별지 1 배당표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원을 3,736,965,805원으로,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배당액 787,810,960원을 743,781,426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920,432,213원을 29,237,00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483,722,987원을 3,144,752,81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가. 주식회사 E의 사업 시행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1)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는 [redacted]시 G 일대 지상에 관광숙박시설(H)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E는 2005. 6. 10.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H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시공사인 I이 신축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6. 2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와 신축건물 등에 관한 분양(처분), 관리 및 운용사무를 피고 C이 수탁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및 토지신탁계약 특약을 체결하고(위 토지신탁계약 및 토지신탁계약 특약에 관하여, 2005. 12. 3., 2007.경, 2008. 10.경, 2009. 7. 8.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하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만 하고, 특정 변경계약을 가리키는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된 날짜로 특정하기로 한다), 피고 C에게 위 사업시행을 위탁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4조(건물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다만 위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자금차입)
① 수탁자는 건물 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위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자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토지와 준공 후의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수탁자는 건물의 준공검사 후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및 시기,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를 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건물에 대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이하 생략

제19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④ 수탁자는 전 각 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자체에서는 수탁자가 대지급하는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이자의 이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1, 2012년경 위탁자인 E, 수익자인 B, J, I 등은 수탁자 C이 지출하는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하여 연 8.5%의 이자를 가산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공문 및 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제20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32조(계약의 변경)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특약

제2조(토지신탁계약과 본 특약의 관계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신탁함에 있어 대출채권자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수탁자는 신탁건물을 건축함과 아울러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관리·운용하는 한편 신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가 본 신탁사업에 따른 신탁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에 본 신탁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5조(근저당권의 설정)

① 위탁자는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기재 신탁등기를 경료하기 직전 또는 경료함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동시에, 제1-1, 1-2, 1-3대출채권 및 제2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54,600,000,0000원으로 하는 제1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제1-1, 1-2, 1-3대출채권자 및 제2대출채권자 앞으로 각각 설정하여야 한다. 본 항에 규정된 근저당권은 해당 대출채권자에게 만족스러운 내용과 형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본 신탁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건물에 대하여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1.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제2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제2대출채권자 앞으로 설정한다.
2.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제1-1, 1-2, 1-3대출채권의 각 미상환 원금 잔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제2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제1-1, 1-2, 1-3 대출채권자 앞으로 각각 설정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가 본 신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수익자가 필요자금을 조달하여 그 지급사유의 발생 전에 수탁자에게 선급하여야 한다.

1. 내지 5. (생략)
6. 제1-1 내지 제1-3 대출채권 및 제2대출채권에 관한 이자 및 연체이자
7., 8. (생략)
9. 시공자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본항 제1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기타 제3조 기재 유원지시설 및 도로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의 각 공사대금, 기타 제3조 기재 유원지시설 및 도로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의 각 공사대금, 연체이자 및 그 부대비용
10. 제1-1 내지 1-3 대출채권 및 제2대출채권의 각 원금
11. 시공사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금 삼백오십억(₩35,000,000,000)의 공사대금, 연체이자 및 그 부대비용(다만 본조 제4항에 따른 금액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대금, 연체이자 및 부대비용을 말하고, 이하 '준공금'이라고 한다)
12. (생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제32조(비용 및 신탁수익의 지급순위 및 계좌의 인출순위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계정에 속하는 금전 및 선수비용금 계정에 속하는 금전으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다음 각호 기재의 항목순서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수분양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수분양금 및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2. 본 특약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그 지급우선순위는 본 특약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각호 기재 항목순서에 따른다)
3. 내지 6. (생략)

■ 2009. 7. 8. 토지신탁계약특약 변경계약서 [※ 위탁자(수익자) E, 제1순위 우선수익자(원고 B, 주식회사 J, 원고 B의 권리에 대한 참여자로서 원고 A), 제2순위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 I, 수탁자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다]

제2조(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특약 별지23 및 제3조의 2 내지 4 추가)

① 신탁특약 특약별지23을 신설하여 본 변경계약 별지23의 내용으로 한다.

② 신탁특약 제3조에 이어서 제3조의 2 내지 4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의 2(신탁부동산의 임대차)

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은 위탁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인 유한회사 K에게 신탁부동산 중 특약별지23 목록 기재 부분을 임차하는 내용으로 위탁자, 수탁자, K 및 주식회사 L 사이에 2009. 7. 8.자로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 중 특약별지23 목록 기재 부분을 임대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는 본 신탁사업의 운영개시를 위한 것으로서 위탁자의 요청과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의 3(신탁재산의 운영)

① 신탁재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비용 및 운영손실 발생 시 위탁자가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부담하기로 하되, 운영비용이 부족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재산으로 우선 충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수탁자가 불가피하게 신탁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신탁계약상 최우선 순위로 상환받기로 한다.』

제3조(신탁특약 제5조 제4항의 추가)

신탁특약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본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 중 특약별지23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본조 제3항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도 선순위로 K 임대차계약에 따른 K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기로 한다.』

3) 이후 피고 C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5. 6. 30. I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 B과 소외 주식회사 J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시공사인 I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각 우선수익권 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 B과 E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및 대출금채권 양도, 원고 A 주식회사의 질권설정

1) E는 2005. 6. 24.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제1-1 대출계약 : 차용원금 25,000,000,000원, 이자율 연 9.55%

② 제1-2 대출계약 : 차용원금 10,000,000,000원, 이자율 연 10.4%

③ 제1-3 대출계약 : 차용원금 65,000,000,000원, 이자율 연 9%

④ 제2 대출계약 : 차용원금 44,980,000,000원(대출한도는 50,000,000,000원), 이자율 연 7%

한편 원고 B은 같은 날 그 중 제1-1, 1-2, 1-3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타 일체의 권리를 주식회사 J(M, N, O의 각 수탁회사, 이하 'J'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J은 100,000,000,000원의, 원고 B은 44,980,000,000원의 각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위 대출금채권자들 및 피고 C은 앞서 살펴본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특약 제5조와 같이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B을 1순위, J을 2순위로 하여 각 대출금 원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P 주식회사, 이하 'A'이라 한다)는 원고 B이 가지는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 중 일부인 29,237,000,000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수탁자 주식회사 L)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취득

1)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즈음하여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자, E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약 25,000,000,000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09. 7.경 최우선적으로 투자금 회수 담보를 확실하게 제공해주는 조건하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 2009. 7.경 피고 C 및 기존의 모든 이해관계자인 E, 원고 B, J, 원고 A, I은 원고보조참가인이 투자하는 자금을 아래 3)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사업시행자인 E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작성되었다.

3) 이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은 투자금 25,000,000,000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지시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라 위 투자금에 관하여 E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동산 중 일부(별지2 부동산목록 중 순번 3 ~ 38, 40 ~ 45번, 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한 유한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00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K는 2009. 7. 8.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L은 K가 E에게 가지는 25,0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취득하였다. K는 2010. 7. 8.경 피고 C과 E에게 위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각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임차권설정등기

1)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특약 제5조에 따라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618 ~ 626번 부동산(별지3 부동산목록 분류표 기재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이하에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으로 부동산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3의 표 기재상 배당물건 번호를 의미한다)에 관하여, 2005. 8. 11. 채권최고액을 36,400,000,000원으로 하는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18,200,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공동 1순위로 각 마쳐졌다.

2) 2009. 11. 20.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피고 C은 2010. 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일부 채권에 대한 질권자 원고 A), J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K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았다.

3) 이에 원고 B과 J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3, 4, 5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405호)을 받아 2010. 8. 23. 가처분등기를 마친 다음, 각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확정판결(원고 B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redacted]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가합13151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 J : [redacted]지방법원 2014. 5. 13. 선고 2013가합537838 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통하여 원고 B은 위 가처분등기에 기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8. 채권최고액 58,474,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4. 1. 27. 원고 B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액 29,237,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J은 위 가처분등기에 기하여 2015. 3. 27. 채권최고액 130,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의 근저당권에 이은 2순위, 배당물건 번호 순번 3, 5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1순위)를 마쳤다.

4) 피고 C은 2011. 2. 28.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K에게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011. 2. 28.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차 목적물이 반환되자, L은 2011. 3. 1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임대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00원을 질권자인 L에게 직접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L은 [redacted]법원 2012가합16570호로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소유자인 C을 상대로 직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금 25,000,000,000원 및 2011. 3. 1.부터 2012. 9.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5)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5. 31. L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해지하고 L의 K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담보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양수하였고, L은 2016. 6. 7. 원고 B, J, 원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아울러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7. 1. 위 [redacted]지방법원 2012가합16570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6) 한편, 피고 C은 2010. 7. 23.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위한 취·등록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J으로부터 1,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J은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586 ~ 594번 부동산(배당물건 번호 순번 6번)에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

1)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였던 I은 50,843,1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redacted]지방법원 2010카단5649호)을 받아, 2010. 10. 19.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I은 [redacted]법원 2013. 7. 11. 선고 2012나29634호 판결로써 공사잔대금채권 중 58,083,750,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자, 2014. 11. 17. [redacted]지방법원에 위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별지2 부동산목록(순번 1 ~ 626번, 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의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제반 시설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1.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redacted]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 11,336,693,209원 및 그 이자 3,515,643,287원, 신탁사무처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2,034,677,66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459,173,789원, 신탁보수 7,882,945,205원, 총 합계액 25,229,133,159원(= 11,336,693,209원 + 3,515,643,287원 + 2,034,677,669원 + 459,173,789원 + 7,882,945,205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3) 한편 이 사건 신탁재산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지상의 집합건물들과 제2차 사업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나대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I에 의하여 경매대상이 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을 현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콘도미니엄 동	워터파크	순번 1, 2
	상가	순번 3 ~ 54
	콘도미니엄	순번 55 ~ 585
호텔 동	1층 ~ 6층	순번 586 ~ 592
	15층	순번 593
	7층 ~ 14층	순번 594
이 사건 건물 대지(대지권의 목적 외)		순번 595 ~ 615
이 사건 건물 주변 나대지(2차 사업부지)		순번 616 ~ 626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졌는데, 경매대상 부동산 전체의 감정가액은 합계 261,618,143,300원[= 구분건물 및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 ~ 594번) 222,825,297,800원 + 그 외 토지(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595 ~ 626번) 38,792,845,500원]이었으나, 5차례의 유찰을 거쳐 2016. 6. 22. 제6차 경매기일에서 감정가액의 17% 정도인 44,110,000,000원에 입찰한 Q 주식회사가 낙찰받아 2016. 6. 29.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으며, Q 주식회사는 2016. 8. 2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경매법원은 2016. 10. 28. 배당기일에서 전체 배당할 금액 44,495,653,000원 중 44,099,452,268원을 실제 배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상이하여, 경매법원은 별지3 부동산목록 분류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을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따라 각 배당물건 번호 별로 실제 배당액 및 이에 대한 채권순위 및 채권액을 안분하는 배당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산서를 작성하였고, 채권자별 합계액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다만 이 배당표에는 배당물건 번호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배당물건번호	별지2 부동산목록	제한물권 내역
1 (워터파크 및 상가)	순번 1 ~ 54	1순위 근저당권 B(채권최고액 58,474,000,000원) 근저당부질권 A(29,237,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 J(채권최고액 130,000,000,000원)
2 (콘도 시설)	순번 55 ~ 422 (아래 3항 14개 부동산 제외)	1항과 동일
3 (콘도 시설)	순번 124, 170, 216, 247, 262, 292, 293, 324, 338, 339, 372, 400, 416, 418	1순위 근저당권 J(채권최고액 130,000,000원)
4 (콘도 시설)	순번 423 ~ 585 (아래 5항 17개 부동산 제외)	1항과 동일
5 (콘도 시설)	순번 428, 431, 446, 462, 473, 492, 508, 516, 517, 518, 519, 522, 524, 525, 534, 550, 570	3항과 동일
6 (호텔 시설)	순번 586 ~ 594	1순위 근저당권 J(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2, 3순위 근저당권 I(채권최고액 4,550,000,000원)
7 (대지권의 목적 외 토지)	순번 595 ~ 617	제한물권 없음
8 (2차 사업부지)	순번 618 ~ 626	1순위 근저당권 J(채권최고액 36,400,000,000원) 1순위 근저당권 B(채권최고액 18,200,000,000원)

6) 피고 C은 배당요구한 금원 중 신탁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부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17,346,187,954원(= 신탁사무처리비용 11,336,693,209원 + 그 이자 3,515,643,287원 + 신탁사무처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2,034,677,669원 + 이에 대한 부대비용 459,173,789원)을,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신탁법상의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로 1순위로 다음과 같이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받았고, 2순위로 피고 [redacted]시에서 청구한 당해세 787,810,960원이 역시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된 다음, 그 나머지 금액이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이나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었다.

배당물건 번호	배당액	배당순위 및 배당액		
		1순위(필요비·유익비)	2순위(당해세)	3, 4순위
1	13,171,924,739원	피고 C 5,181,077,554원	피고 [redacted]시 235,308,743원	A (근저당권부질권자) 7,755,538,442원
2	13,204,468,002원	피고 C 5,193,878,200원	피고 [redacted]시 235,890,109원	A (근저당권부질권자) 7,774,699,693원
3	368,647,582원	피고 C 145,004,754원	피고 [redacted]시 6,585,674원	① I(가압류채권자) 108,042,581원 ② J(근저당권자) 109,014,573원
4	5,757,869,886원	피고 C 2,264,814,825원	피고 [redacted]시 102,860,983원	A (근저당권부질권자) 3,390,194,078원
5	519,001,991원	피고 C 204,145,531원	피고 [redacted]시 9,271,667원	J(근저당권자) 305,584,793원
6	4,531,805,070원	피고 C 1,782,551,448원	피고 [redacted]시 80,958,051원	① J(1순위 근저당권자) 1,100,440,000원 ② I(2순위 근저당권자) 1,567,855,571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배당물건 번호	배당액	배당순위 및 배당액		
		1순위(필요비·유익비)	2순위(당해세)	3, 4순위
7	4,081,084,934원	피고 C 1,605,264,072원	피고 [redacted]시 72,906,199원	일반채권자 ① R 7,140,865원 ② I 1,828,773,527원 ③ S 15,799,115원 ④ T 5,378,240원 ⑤ 원고보조참가인 531,059,060원 ⑥ U 9,201,981원 ⑦ V 5,561,875원
8	2,464,650,064원	피고 C 969,451,570원	피고 [redacted]시 44,029,534원	1순위 근저당권자 ① B 483,722,987원 ② J 967,445,973원
합계	44,099,452,268원	17,346,187,954원	787,810,960원	

바. 각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1) 원고 A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 피고 C, 2순위 피고 [redacted]시에 이어 나머지 금원에 대해 원고 B의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3순위로 합계 18,920,432,213원(= 7,755,538,442원 + 7,774,699,693원 + 3,390,194,078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원고 B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 피고 C, 2순위 피고 [redacted]시에 이어 나머지 금원에 대해 3순위로 같은 순위의 근저당권자인 J과 채권최고액의 비율로 안분 받아 483,722,98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원고 A은 피고 C의 배당액 중 10,316,567,787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원고 B은 피고 C의 배당액 중 7,029,620,167원, 피고 [redacted]시 배당액 중 44,029,534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7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 피고 C, 2순위 피고 [redacted]시에 이어 3순위로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나머지 금원을 안분 받아 531,059,06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배당기일에서 피고 C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6. 11. 4. [redacted]지방법원에 피고 C을 상대로 배당물건 번호 순번 6, 7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C에게 배당된 3,387,815,520원(= 1,782,551,448원 + 1,605264,072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redacted]지방법원 2016가합56189호)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한 주장

1) 피고 C이 신탁법상의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로 1순위로 배당받은 17,346,187,954원은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

2) 필요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 중 필요비가 투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만 피고 C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 B의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피고 [redacted]시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당해세는 배당물건 번호 각 순번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당해세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피고 [redacted]시가 피고 C에 대하여 청구한 당해세를 배당물건 번호 각 순번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위법이 있다.

다. 원고들이 배당이의하는 부분

원고 A과 B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C 주식회사에 배당된 12,639,770,579원[= 5,181,077,554원 + 5,193,878,200원 + 2,264,814,825원, 이 중 원고 A은 원고 B의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질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기존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10,316,567,787원(= 질권 채권최고액 29,237,000,000원 - 기존 배당액 18,920,432,213원)에 대하여, 원고 B은 나머지 2,323,202,792원(= 피고 C의 배당액 12,639,770,579원 - 원고 A에게 추가 배당되어야 할 금액 10,316,567,787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있다]에 대하여, 또 원고 B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C에 배당된 969,451,570원의 1/3인 323,150,523원(원 미만 버림), 피고 [redacted]시에 배당된 44,029,534원의 1/3인 14,676,511원(원 미만 버림), 합계 337,827,034원(= 323,150,523원 + 14,676,511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내용

1) 피고 C의 주장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 대상인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범위는 신탁의 목적 및 수탁자가 처리하는 신탁사무에 맞게 민법 및 다른 법령이 정한 것보다 폭넓게 인정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수탁자인 피고의 지위 및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이 피고로 하여금 단순히 부동산 명의만 보유하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공사도급계약 등 각종 용역계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험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신탁재산을 보전하는 일반적인 신탁계약보다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원금 13,371,370,878원 및 이자 3,974,817,076원은 신탁법상 필요비·유익비에 해당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은 것은 적법하다.

2) 판단

가)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신탁법 제46조 제2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함으로써 수탁자의 필요비·유익비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신탁법 제48조 제1항).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신탁법 제48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문제되므로 살피건대, 우선 신탁법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① 신탁법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신탁법 제48조 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항의 우선변제권은 그중에서도 신탁재산의 객관적 가치 증대에 기여하여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한정하고 있는 점, ② 특정한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공익적 성격을 지닌 비용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담보물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신탁사업의 특성상 소요비용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고 소요비용의 성격 및 범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들의 다툼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탁계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③ 신탁법의 조문체계 및 문언상으로도 제48조 제1항은 '필요비, 유익비'에 한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고,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필요비·유익비'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필요비·유익비'를 민법상 '필요비·유익비(민법 제203조, 제367조)'와 다른 개념으로 신탁의 목적 및 수탁자가 처리하는 신탁사무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48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필요비·유익비'라는 표현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신탁계약의 경우 소요비용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다툼이 예상되므로 이를 쉽게 확장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바, 신탁법 제48조 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항의 '필요비·유익비'를 민법상 필요비·유익비의 개념보다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신탁사업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필요비·유익비'는 민법상 '필요비·유익비'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중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유익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C이 아직 지출하지 않은 채무 및 이미 지출한 채무에 대한 이자가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 C은 수탁자가 아직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를 부담하여 지출할 예정인 비용 2,034,677,669원(= 소송비용 등 951,943,249원 + 수분양자반환금 934,804,900원 + 제세공과금 147,929,5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459,173,789원의 합계 2,493,851,458원과 필요비·유익비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515,643,287원이 필요비·유익비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①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문언상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출이 예정된 비용'이 아닌 '이미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한 점, ②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필요비·유익비'는 민법의 필요비·유익비와 달리 해석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민법상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에 있어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점유자 또는 제3취득자가 '비용지출이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점 등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비추어보면, 신탁법상 필요비·유익비는 수탁자가 이미 지출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필요비·유익비로 지출한 비용의 지출일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상 필요비·유익비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인도청구를 할 때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신탁법상의 필요비·유익비 역시 수탁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비로소 변제기에 도달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필요비로 인정되는 항목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출일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필요비로 인정될 수 없다.

다) 피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필요비·유익비 명목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 합계 3,515,643,287원, 채무를 부담하여 지출할 예정인 비용 합계 2,034,677,669원 및 그 부대비용으로 459,173,789원을 배당요구함으로써 이를 배당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이자 합계 3,515,643,287원 및 채무부담금 합계 2,034,677,66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459,173,789원은 필요비·유익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 할 것이다.

다. 건물에 대하여 투입한 비용이 그 부지에 대한 유익비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이전받았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이를 신축함에 따라 비로소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그 대지인 이 사건 사업 관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부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가치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으로 신탁법이 정한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리 민법은 건물과 토지를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건축비용을 지출하여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이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할 뿐이다.

라. 피고 C이 이미 지출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0. 28. 기준으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① 보험료, ② 소송비용, ③ 수분양자 반환금, ④ 전기료 등 공과금과 시설관리비, ⑤ 취·등록세 등, ⑥ 채무변제금으로 합계 11,336,693,209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항목은 위와 같은 신탁법상 필요비·유익비에 관한 해석에 비추어 모두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에서 각 지출비용의 필요비 해당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가) 보험료

(1)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다음과 같이 재산손해(section Ⅰ) 및 기계손해[section Ⅱ, machinery breakdown, 기계기구 고장)]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재산종합보험(속칭 패키지보험)에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예측불가능한 보험사고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신탁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채권자 전체를 위한 공익적 비용에 해당하여 신탁법상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험기간	보험자 ('주식회사' 생략)	총가입금액 (재산손해 + 기계손해)	보험료
2010. 8. 20.부터 2011. 8. 20.까지	W	176,672,000,001원	79,594,869원
2011. 10.경	X	176,672,000,001원	48,000,000원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X	176,672,000,001원	73,753,780원
2013. 8. 20.부터 2014. 8. 20.까지	W	176,672,000,001원	72,346,953원
2014. 8. 20.부터 2015. 8. 20.까지	W	176,672,000,001원	71,640,018원
2015. 8. 20.부터 2016. 8. 20.까지	X	176,672,000,001원	70,354,260원
2016. 8. 19.부터 2017. 8. 19.까지	Y	176,672,000,001원	70,279,528원
합계			485,969,408원

(2)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금원 중 구축물과 기계 부분에 관한 보험료는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이상 건물에 대한 보험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가입한 보험 중 재산손해(Section Ⅰ) 가입금액 176,651,000,001원은 건물(building) 가액 118,247,991,872원, 구축물(structure) 가액 26,860,000,000원, 기계기구류(machinery) 가액 31,553,008,129원의 합계액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구축물 및 기계기구류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이 위락 시설로 이용됨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를 분리할 경우 건물 및 분리한 시설 자체에 대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구축물, 기계기구류가 건물과 일체로 일괄매각되어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중 일부를 분리·반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 C이 보험자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류를 분리하여 가액을 산정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위와 같은 보험계약상 분류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류를 법률상 개념으로 엄격하게 분류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다기보다는 보험계약상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액 중심으로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건물 부분 뿐만이 아니라 구축물과 기계 부분에 관한 보험료 역시 신탁법상 필요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피고 C이 지출한 보험료 중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락허가결정일인 2016. 6. 29. 이후에 보험기간이 도래한 2016. 8. 19.부터 2017. 8. 19.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료 70,279,528원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경락허가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수탁자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락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담보물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예측할 수 없는바, 경락허가결정일인 2016. 6. 29. 이후 지출한 보험료(일부 보험기간이 2016. 6. 29. 이후에 도래하는 2015. 8. 20.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터 2016. 8. 20.까지 보험기간인 보험료에 관하여는 2015. 8. 19. 납부함)에 관하여는 필요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 C이 제출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 중 보험료 원금으로 기재한 485,969,408원 중 필요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415,689,881원(= 485,969,409원 - 경락허가결정 이후 지출한 보험료 70,279,528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70,279,527원(= 485,969,408원 - 415,689,881원)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포함한 금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 할 것이다.

나) 소송비용

(1) 피고 C은 ① 이 사건 건물 중 콘도의 수분양자들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 응소한 비용, ②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의 이 사건 건물 중 1층 AA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③ 원고 B, J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한 비용, ④ 시공사 I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 응소한 비용, ⑤ L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응소한 비용, ⑥ 용역업체들의 용역대금지급청구소송에 응소한 비용 등으로 합계 388,866,038원을 지출하였고, 이 비용도 모두 필요비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75, 제1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388,866,038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다. 오히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송에 지출한 비용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 자체의 보존·관리'에 대하여 지출한 공익적 비용이라기보다는 피고 C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 및 그에 따른 채무부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피고 C이 소송비용 지출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신탁재산의 권리변동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고 신탁재산 자체에 지출한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 중 소송비용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388,866,038원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수분양자반환금

(1)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콘도미니엄의 수분양자들이 피고 C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분양대금 원금 및 이자 합계 4,743,232,850원을 반환하였는데, 이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철회하고 해당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거나 집행권을 통하여 강제집행 하였을 것으로 분양대금반환의무가 낙찰자에게 승계되고 낙찰대금이 줄어 배당 재원이 감소하였을 것이어서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위 비용 4,743,232,850원은 신탁재산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34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중 콘도미니엄의 수분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자들에게 분양대금 원금 및 이자 합계 4,743,232,85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이 지출한 수분양자반환금은 신탁재산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권리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에 불과하여 필요비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경우 수분양자반환금이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불과함에도 수탁자가 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어 담보물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순위를 인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 중 수분양자반환금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4,743,232,850원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전기료 등 공과금과 시설관리비

(1) 전기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전력에 납부한 전기료는 3,264,083,290원인데, 이 사건 건물이 기초지반으로 침투·유입하는 지하수를 집수정 내부에 설치된 펌프로 강제 배수하여 부력(양압력)을 감소시키는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건축되어 건물의 유지, 보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펌프 가동에 전기가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보완 공사', 보일러 가동 등을 위하여 전기가 사용되었으므로, 위 전기료 3,264,083,290원은 필요비라고 주장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살피건대,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4, 13, 26, 27, 30 내지 42, 51 내지 58, 62 내지 113, 115 내지 134, 제21호증의 1 내지 2, 제25호증의 1 내지 3, 제22,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전력에 2010. 9.경부터 2016. 5.경까지 일반용 전기료 2,141,930,300원, 2010.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심야용 전기료 77,520,660원, 2011. 1.경부터 2014. 3.경까지 전기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044,632,230원 합계 3,264,083,290원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구조설계시 지하수로 인하여 작용하는 부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지하 3층에 15곳의 영구배수 집수정(SUMP PIT)을 설계하여 시공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2012.초경에 개장준비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C은 이 사건 2017. 12. 13.자 준비서면에서 심야용 전기료 77,520,660원이 심야시간에 전기를 공급받아 온수, 냉수 등을 생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한 전기라고 진술하여 심야용 전기는 배수펌프 가동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위 심야용 전기료가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일반용 전기료 2,141,930,300원 및 전기료 보증금 1,044,632,230원에 관하여 위 전기료가 상당한 금액으로 월별 전기요금이 최저 0원(2010. 9.분, 2011. 8.분) 또는 42,062,280원(2010. 10.분)에서 최대 65,955,940원(2012. 2.분)으로 편차가 심하여 그 전부가 배수펌프 작동이나 개장준비공사, 보일러 가동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위 전기요금 중 배수펌프에 대하여 사용된 전기량 또는 개장준비공사에 사용된 전기요금의 신탁재산의 보존과의 관련성 및 그 사용 전기량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는 등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지출한 전기료가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C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료 기본요금이 월 30,000,000원에 이르러 전기료 명목으로 매월 최소 30,000,000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스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redacted]요금으로 주식회사 AB에 합계 255,985,260원을 납부하였고, 이는 계량기 교체비용 또는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8호증의 5 내지 12, 15 내지 22, 43 내지 50, 59, 제23호증의 1 내지 4, 제3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B 주식회사가 피고 C에 [redacted]가스요금으로 합계 255,968,620원을 청구한 사실, 피고 C이 2011. 10. 31.부터 2012. 12. 13.까지 4차례에 걸쳐 255,985,260원을 납부한 사실, [redacted]도 [redacted]가스 공급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가스계량기 검, 교정 및 교체비용은 기본요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된 사실, I이 피고 C에게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일러를 충분하게 가동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 C이 제출하는 위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이 이 사건 신탁목적대상의 개량,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이 2012. 12. 13. 이후에 4년 가까이 [redacted]가스요금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redacted]도 [redacted]가스 공급규정 제13조 제3항에 가스계량기 설치비용이 기본요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가스 사용량이 없음에도 가스사용요금이 청구된 사실만으로 바로 이를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에 해당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3) 수도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도요금으로 [redacted]시 맑은물사업소에 합계 13,203,550원을 납부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8호증의 14, 6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1. 12. 20. 10,099,140원, 2012. 12. 18. 3,104,410원 합계 13,203,550원의 수도요금을 [redacted]시 맑은물사업소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이 이 사건 신탁목적대상의 개량,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이 2012. 12. 18. 이후에 4년 가까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동파 등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 없이도 이 사건 건물에 수도와 관련된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

(4) 시설관리비

살피건대, 을가 제8호증의 23 내지 25, 28, 29, 60, 1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 점검비, 세관비로 에너지관리공단에 1,045,500원, AC에 5,500,000원 합계 6,545,5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 정기점검용역비로 주식회사 AD에 1,650,000원을, 소방시설 점검비로 주식회사 AE에 5,830,000원을, 지하 집수정 및 바닥 준설공사 비용으로 주식회사 AF에 14,3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비용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소모성으로 사용된 비용이 아닌 신탁재산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된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 합계 28,325,500원(= 6,545,500원 + 1,650,000원 + 5,830,000원 + 14,300,000원)은 필요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C은 AB 주식회사에 [redacted]가스에 대한 보증보험료로 2,218,410원을 2회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필요비라고 주장하고, 을가 제8호증의 24, 6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redacted]가스 사용요금 관련 보증금 역시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필요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시설관리비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3,566,034,420원 중 시설관리비 28,325,500원만이 필요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3,537,708,920원(= 3,566,034,420원 - 28,325,500원)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취·등록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이 거래의 객체로서 가치를 갖추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 취·등록세로 1,622,590,493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 을가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등록세 등으로 2012. 2. 15. 합계 768,804,800원(= 취득세, 농특세 538,137,340원 + 등록세, 지방교육세 230,667,460원)을 지급하였다가 일부 금액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522,590,493원(= 291,923,033원 + 230,667,460원, 각 가산세가 포함된 금원)을 납부한 것으로 채권을 신고한 점, ② 위 취·등록세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도록 지출한 비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신탁재산의 가치에 변동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지출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귀속 문제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가치 보존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위 취·등록세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없고 피고 C에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신탁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소외 AG가 담당 세무사를 통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위 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가산된 세액으로 이에 관하여 피고 C에 별다른 과실이 있는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취·등록세 납부액 522,590,493원은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C은 이에 추가하여 호텔 취·등록세로 주장한 1,100,000,000원 부분도 필요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은 피고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호텔 취·등록세 지출을 위하여 J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취·등록세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1,622,590,493원 중 실제 지출한 취·등록세 522,590,493원만이 필요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1,100,000,000원(= 1,622,590,493원 - 522,590,493원)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다.

바) 채무변제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 AA호에 진행되고 있었던 강제경매([redacted]지방법원 AH)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Z에 대하여 용역대금 청구소송([redacted]지방법원 2010가합52190) 진행 도중 위 Z에 설계용역대금 5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 위 AA호가 경매목적물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변제금은 이 사건 건물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Z에 설계용역대금으로 530,000,000원(= 2013. 7. 24. 518,000,000원 + 2013. 8. 8.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채무변제금은 위 피고의 설계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위 강제경매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권리귀속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가치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무변제금 530,000,000원이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 중 Z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지출한 530,000,000원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C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 C이 경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상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이 2009. 7. 8.자 토지신탁계약특약 변경계약서 제3조의3 제2항에 따라 피고 C의 피고의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동의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B,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J,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0. 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82조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쳤는바, 위 신탁등기에 의하여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서 공시됨에 따라(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이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 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이 공문 및 동의서를 통하여 피고 C이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은 최선순위로 배당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에서 본 증거들, 을가 제1호증의 6,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C이 위 특약 변경계약이 공시되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신탁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등기로서 공시되는 것은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일 뿐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부적인 특약 내용에 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 C이 우선변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2009. 7. 8.자 신탁계약 특약 변경계약' 제3조의3 제2항은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 경우 위 특약 변경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신탁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신탁재산을 초과하는 비용부담이 있을 경우 이에 관하여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는다는 내용인데, 원고들은 위 특약 변경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특약 변경계약의 내용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C에게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AI, E가 2012. 7. 16. 이미 지출하거나 향후 불가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하게 지출할 신탁사무처리비용에 관하여 위 피고가 다른 권리자에 앞서 최우선 상환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 및 동의서를 발송한 사실(을가 제16호증의 1, 2), 원고 B은 2013. 7. 18. H 상가 AA호 강제경매 취소를 위하여 위 피고가 납부하는 항고보증금 및 경매신청권자 Z에 대한 채무변제금에 관하여는 신탁사무처리비용 대지급금의 우선변제를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의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을가 제16호증의 3), I은 피고가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이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가 제16호증의 4), 원고 B, AI, 원고 A은 2011. 1.경 '2011. 1. 10. 기준 미납 전기료'에 관하여 피고의 최우선순위 지급과 이자를 인정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발송한 사실(을 제17호증의 1, 2, 3), E가 2015. 3.경 위 피고의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송한 사실(을가 제18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문은 모든 비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최우선변제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특약 변경계약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 당사자들이 공문, 동의서, 확인서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 C의 정당한 배당액 및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 관한 안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 13,371,370,878원 및 이자 3,974,817,076원 합계 17,346,187,954원을 배당받았으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필요비, 유익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험료 415,689,881원, 시설관리비 28,325,500원, 취·등록세 522,590,493원 합계 966,605,874원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만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할 것이다.

2) 한편,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 매각대금이 모두 대지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배당되었는데, 다만 그들 사이의 배당순위만 문제되는 경우 대지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대지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후순위권자가 건물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 배당물건 번호 1 ~ 8번으로 분류된 것과 같이, 그 현황 및 이해관계인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경매로 진행되어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된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피고 C이 지출한 비용 중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필요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합계 966,605,874원인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원은 모두 이 사건 경매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상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필요비에 관하여 대지권의 목적 외 건물 대지 및 2차 사업부지(배당물건 번호 순번 7, 8번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4)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의 각 배당액에 따라 위 인정된 필요비를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

배당물건 번호	배당액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부동산의 배당액 비율에 따라 위 인정 필요비 966,605,874원을 안분한 결과
1	13,171,924,739원	**339,035,940원**[= 966,605,874원(인정 필요비) × 13,171,924,739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총 배당액), 원 미만 반올림,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13,204,468,002원	**339,873,580원**[= 966,605,874원(인정 필요비) × 13,204,468,002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2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총 배당액)]
3	368,647,582원	**9,488,726원**[= 966,605,874원(인정 필요비) × 368,647,582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3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총 배당액)]
4	5,757,869,886원	**148,203,460원**[= 966,605,874원(인정 필요비) × 5,757,869,886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4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총 배당액)]
5	519,001,991원	**13,358,741원**[= 966,605,874(인정 필요비) × 519,001,991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5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총 배당액)]
6	4,531,805,070원	**116,645,427원**[= 966,605,874(인정 필요비) × 4,531,805,0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6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 6번 총 배당액)]
합계	37,553,717,270원	**966,605,874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5) 기존에 피고 C이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서 배당받은 금원과 위와 같이 안분된 필요비의 차액은 다음과 같다.

배당물건 번호	피고 C 기존 배당금	인정 필요비	차액(경정될 부분)
1	5,181,077,554원	339,035,940원	4,842,041,614원 (= 5,181,077,554원 - 339,035,940원)
2	5,193,878,200원	339,873,580원	4,854,004,620원 (= 5,193,878,200원 - 339,873,580원)
3	145,004,754원	9,488,726원	135,516,028원 (= 145,004,754원 - 9,488,726원)
4	2,264,814,825원	148,203,460원	2,116,611,365원 (= 2,264,814,825원 - 148,203,460원)
5	204,145,531원	13,358,741원	190,786,790원 (= 204,145,531원 - 13,358,741원)
6	1,782,551,448원	116,645,427원	1,665,906,021원 (= 1,782,551,448원 - 116,645,427원)
7	1,605,264,072원	—	1,605,264,072원 (= 1,605,264,072원 - 0원)
8	969,451,570원	—	969,451,570원 (= 969,451,570원 - 0원)
합계	17,346,187,954원	966,605,874원	

사. 소결론

1)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정당한 배당액

원고 B이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8. 채권최고액 58,474,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4. 1. 27. 원고 B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액 29,237,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A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합계 18,920,432,213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필요비가 인정될 경우 위 피고에 대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된 금액과 실제 필요비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는 원고 A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의 한도에서 위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B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C에 배당된 금원 중 위 인정 차액 합계액 11,812,657,599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1번 경정액 4,842,041,614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2번 경정액 4,854,004,620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4번 경정액 2,116,611,365원)은 피고 C의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것이므로 이는 삭제되어야 하고, 위 11,812,657,599원은 원고 A의 기존 배당액이 질권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 10,316,567,787원(= 질권 채권최고액 29,237,000,000원 - 기존 배당금 18,920,432,213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11,812,657,599원 중 10,316,567,787원은 원고 A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1,496,089,812원(= 11,812,657,599원 - 10,316,567,787원)은 원고 B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정당한 배당액

원고 B이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8,200,000,000원으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원고가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483,722,987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C에 배당된 969,451,570원은 모두 피고 C이 배당받을 수 없는 금원이므로, 이는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1/3인 323,150,523원(원 미만 버림)의 범위에서 피고 C의 배당액에서 삭제되어 원고 B에게 배당되어야 한다(원고 B은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 C의 배당액을 감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3) 경정할 배당표의 내용

결국 피고 C의 배당액 17,346,187,954원은 5,210,379,832원[= 17,346,187,954원 - 12,135,808,122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경정액 11,812,657,599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경정액 323,150,523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18,920,432,213원은 위 10,316,567,787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에 대한 경정액)을 추가로 배당한 29,237,000,000원(= 18,920,432,213원 + 10,316,567,787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에는 1,819,240,335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에 대한 경정액 1,496,089,812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에 대한 경정액 323,150,523원)이 추가되어야 한다(원고 B의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청구에 따른 추가 배당으로 인한 최종 배당액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4. 원고 B의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3. 바.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물건 번호 순번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르므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 비록 일괄경매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물건 번호 순번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피고 [redacted]시가 피고 C에 대하여 청구한 당해세를 배당물건 번호 각 순번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redacted]시에게 2순위로 44,029,53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618 ~ 626번)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도에 부과된 재산세는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순번	지번	재산세
618	[redacted]시 AJ 임야 3,156㎡	467,541원
619	[redacted]시 AK 임야 131㎡	15,516원
620	[redacted]시 AL 임야 22,340㎡	2,507,221원
621	[redacted]시 AM 임야 2,876㎡	2,374,622원
622	[redacted]시 AN 임야 13,190㎡	1,794,597원
623	[redacted]시 AO 임야 74,546㎡	5,792,059원
624	[redacted]시 AP 임야 591㎡	85,920원
625	[redacted]시 AQ 임야 334㎡	14,558원
626	[redacted]시 AR 임야 17,157㎡	1,214,566원
합계		14,266,600원

따라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당해세로서 2순위로 피고 [redacted]시에 배당된 44,029,534원 중 위 합계액 14,266,600원을 초과하는 29,762,934원(= 44,029,534원 - 14,266,600원)은 피고 [redacted]시의 위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9,762,934원의 1/3인 9,920,978원의 범위에서 피고 [redacted]시의 배당액에서 삭제하여 원고 B에게 배당되어야 한다(원고 B은 피고 [redacted]시에 대하여도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위 피고의 배당액을 감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 [redacted]시의 배당액 787,810,960원은 777,889,982원(= 787,810,960원 - 9,920,978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483,722,987원은 2,312,884,300원[= 483,722,987원(기존 배당액) + 1,819,240,335원(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따른 추가 배당액) + 9,920,978원(피고 [redacted]시에 대한 청구에 따른 추가 배당액)]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별지1]

[redacted] 지 방 법 원
배 당 표

사 건 [redacted]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할금액		금	44,395,653,000	
명세	매각대금	금	44,110,000,000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	금	277,538,082	
	전경매보증금	금	0	
	매각대금이자	금	8,114,918	
	항고보증금	금	0	
집행비용		금	296,200,732	
실제배당할 금액		금	44,099,452,268	
매각부동산		별지 기재와 같음		
채권자		[redacted] 주식회사	의정부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채권금액	원금	13,371,370,878	787,810,960	25,000,000,000
	이자	3,974,817,076	0	12,414,215,135
	비용	0	0	0
	계	17,346,187,954	787,810,960	37,414,215,135
배당순위		1	2	3
이유		필요비, 유익비(신탁법)	당해세	배당요구권자(확정판결) [redacted] 의 승계인
채권최고액		0	0	0
배당액		17,346,187,954	787,810,960	531,059,060
잔여액		26,753,264,314	25,965,453,354	25,434,394,294
배당비율		100 %	100 %	1.42 %
공탁번호 (공탁일)		금제 호 (. . .)	금제 호 (. . .)	금제 호 (. . .)

3-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채권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변경전)
채권금액	원금	58,083,750,478	176,000,000	22,490,000,000
	이자	70,757,147,431	215,845,640	28,238,197,533
	비용	0	0	0
	계	128,840,897,909	391,845,640	50,728,197,533
배당순위		3	3	3
이유		신청채권자(확정판결)	배당요구권자(확정판결)	근저당권부질권자(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0	0	29,237,000,000
배당액		1,936,816,108	5,561,875	18,920,432,213
잔여액		23,497,578,186	23,492,016,311	4,571,584,098
배당비율		1.5 %	1.42 %	64.71 %
공탁번호(공탁일)		금제 호 (. . .)	금제 호 (. . .)	금제 호 (. . .)

채권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채권금액	원금	182,880,000	253,426,000	1,100,000,000
	이자	196,028,163	249,662,796	440,000
	비용	0	0	0
	계	378,908,163	503,088,796	1,100,440,000
배당순위		3	3	3
이유		배당요구권자(확정판결)	배당요구권자(확정판결)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0	0	1,430,000,000
배당액		5,378,240	7,140,865	1,100,440,000
잔여액		4,566,205,858	4,559,064,993	3,458,624,993
배당비율		1.42 %	1.42 %	100 %
공탁번호(공탁일)		금제 호 (. . .)	금제 호 (. . .)	금제 호 (. . .)

3-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채권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채권금액	원금	100,000,000,000	36,400,000,000	300,374,500
	이자	125,558,904,110	0	347,924,194
	비용	0	0	0
	계	225,558,904,110	36,400,000,000	648,298,694
배당순위		3	3	3
이유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배당요구권자(확정판결)
채권최고액		130,000,000,000	36,400,000,000	0
배당액		414,599,366	967,445,973	9,201,981
잔여액		3,044,025,627	2,076,579,654	2,067,377,673
배당비율		0.32 %	2.66 %	1.42 %
공탁번호(공탁일)		금제 호 (. . .)	금제 호 (. . .)	금제 호 (. . .)

채권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채권금액	원금	503,800,000	18,200,000,000	4,495,598,425
	이자	609,280,536	0	3,595,741,756
	비용	0	0	0
	계	1,113,080,536	18,200,000,000	8,091,340,181
배당순위		3	3	4
이유		배당요구권자(확정판결)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0	18,200,000,000	4,550,000,000
배당액		15,799,115	483,722,987	1,567,855,571
잔여액		2,051,578,558	1,567,855,571	0
배당비율		1.42 %	2.66 %	34.46 %
공탁번호(공탁일)		금제 호 (. . .)	금제 호 (. . .)	금제 호 (. . .)

2016. 10. 28.

사법보좌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별지2]

부동산 목록

no.						대지권의 비율		
1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4601.54 10020.79	㎡	38366	분의	3829.28
2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42	㎡	38366	분의	124.70
3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67 57.66	㎡	38366	분의	18.70
4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67 57.66	㎡	38366	분의	18.70
5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67 57.66	㎡	38366	분의	18.70
6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1.75	㎡	38366	분의	15.33
7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1.75	㎡	38366	분의	15.33
8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1.75	㎡	38366	분의	15.33
9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68.12	㎡	38366	분의	41.73
10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16 36.88	㎡	38366	분의	13.41
11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16 36.88	㎡	38366	분의	13.41
12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8.19 39.1	㎡	38366	분의	14.21
13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98 38.64	㎡	38366	분의	14.05
14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98 38.64	㎡	38366	분의	14.05
15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98 38.64	㎡	38366	분의	14.05
16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98 38.64	㎡	38366	분의	14.05
17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98 38.64	㎡	38366	분의	14.05
18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98 38.64	㎡	38366	분의	14.05
19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98 38.64	㎡	38366	분의	14.05
20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98 38.64	㎡	38366	분의	14.05
21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40.43 18.81	㎡	38366	분의	14.70
22	제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40.43 18.81	㎡	38366	분의	14.70
23	제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83.81	㎡	38366	분의	20.80
24	제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46.82	㎡	38366	분의	11.62
25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4.52	㎡	38366	분의	16.01
26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77.52	㎡	38366	분의	19.24
27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49.76	㎡	38366	분의	37.17
28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9.2 86.72	㎡	38366	분의	28.77
29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4.93 74.04	㎡	38366	분의	24.57
30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4.93 74.04	㎡	38366	분의	24.57
31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4.93 74.04	㎡	38366	분의	24.5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32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4.93 74.04	㎡	38366	분의	24.57
33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4.93 74.04	㎡	38366	분의	24.57
34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4.93 74.04	㎡	38366	분의	24.57
35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1.24 152.15	㎡	38366	분의	50.48
36	제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23.57	㎡	38366	분의	30.67
37	제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57.95	㎡	38366	분의	39.20
38	제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75.26	㎡	38366	분의	18.67
39	제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904.44	㎡	38366	분의	224.48
40	제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3.45	㎡	38366	분의	43.05
41	제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20.40	㎡	38366	분의	54.70
42	제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81.51	㎡	38366	분의	20.23
43	제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39.64	㎡	38366	분의	34.66
44	제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00.65	㎡	38366	분의	74.62
45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112.45	㎡	38366	분의	333.22
46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9.45	㎡	38366	분의	17.81
47	제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889.9 370.81	㎡	38366	분의	391.57
48	제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50.85	㎡	38366	분의	199.00
49	제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09.77	㎡	38366	분의	75.80
50	제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58.12	㎡	38366	분의	89.29
51	제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16.38	㎡	38366	분의	40.10
52	제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16.38	㎡	38366	분의	40.10
53	제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19.18	㎡	38366	분의	75.54
54	제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83.44	㎡	38366	분의	63.32
55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6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7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8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9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60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61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62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63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64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65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66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67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68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69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70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71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72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73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74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75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76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77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78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79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80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81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82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83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84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85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86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87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88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89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90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91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92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93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94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95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96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97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98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99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00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101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02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03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04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05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06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107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108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109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110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11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12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13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14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15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116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117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118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19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20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21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22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23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124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125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26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27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28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129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130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131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32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33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34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35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136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37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38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39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40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141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142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143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44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45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46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147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48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49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50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51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52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153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154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155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156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57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58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159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60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161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62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5	분의	20.96
163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5	분의	31.69
164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65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66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67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68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69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5	분의	20.96
170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5	분의	20.96
171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72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73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74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5	분의	43.80
175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5	분의	43.80
176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5	분의	20.96
177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78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79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80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81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5	분의	20.96
182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83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84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85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86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5	분의	20.96
187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5	분의	43.80
188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5	분의	43.80
189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90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91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92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5	분의	20.96
193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94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95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96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97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5	분의	36.73
198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5	분의	31.69
199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5	분의	31.69
200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5	분의	20.96
201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5	분의	20.9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202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03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04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05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06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07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08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209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0.26	㎡	38366	분의	31.69
210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11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12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13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14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15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216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217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18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19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20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221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222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223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24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25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26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27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228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29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30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31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32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233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234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235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36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37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38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239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40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41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42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43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8366	분의	36.73
244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0.26	㎡	38366	분의	31.6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245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0.26	㎡	38366	분의	31.69
246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9.25	㎡	38366	분의	20.96
247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9.25	㎡	38366	분의	20.96
248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49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50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51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52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53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54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9.25	㎡	38366	분의	20.96
255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0.26	㎡	38366	분의	31.69
256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57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58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59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60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61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9.25	㎡	38366	분의	20.96
262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9.25	㎡	38366	분의	20.96
263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64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65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66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267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268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9.25	㎡	38366	분의	20.96
269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70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71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72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73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9.25	㎡	38366	분의	20.96
274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75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76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77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78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9.25	㎡	38366	분의	20.96
279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280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281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82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83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84	제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9.25	㎡	38366	분의	20.96
285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86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287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27	㎡	38366	분의	36.7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288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289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290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6366	분의	31.69	
291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6366	분의	31.69	
292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293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294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295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296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297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298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299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00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301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6366	분의	31.69	
302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03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04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05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06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07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308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309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10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11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12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6366	분의	43.80	
313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6366	분의	43.80	
314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315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16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17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18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19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320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21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22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23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24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325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6366	분의	43.80	
326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6366	분의	43.80	
327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28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29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6.27	㎡	36366	분의	36.73	
330	제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331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32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33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34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35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36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8	㎡	38366	분의	31.69
337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8	㎡	38366	분의	31.69
338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339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340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41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42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43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44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45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46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347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8	㎡	38366	분의	31.69
348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49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50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51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52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53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354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355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56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57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58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359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360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361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62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63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64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65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366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67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68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69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70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371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372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373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374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75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76	제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377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78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79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80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81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82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383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384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385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386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87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88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89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90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91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92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393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394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95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96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97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98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399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00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01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02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03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04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405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406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07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08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09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10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11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12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13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14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15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16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417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418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419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20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21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22	제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23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24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25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26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27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28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429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430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31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32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33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34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35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36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37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38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39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440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41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42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43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44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45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46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47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48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49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50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451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452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53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54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55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56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57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58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59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460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61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62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63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464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465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66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67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68	제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69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70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71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72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73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74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475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476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77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78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79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80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81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82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83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84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85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486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87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88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89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90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91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92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93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94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95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496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497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498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499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00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01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02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503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504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05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06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07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08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509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6366	분의	43.80
510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6366	분의	43.80
511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12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13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14	제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515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16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17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18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19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20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6366	분의	31.69
521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6366	분의	31.69
522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523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524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25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26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527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6366	분의	31.69
528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29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30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31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32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33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534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535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36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37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38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6366	분의	43.80
539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6366	분의	43.80
540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541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42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43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44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6366	분의	36.73
545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6366	분의	20.9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546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47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48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49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50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551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52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53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54	제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555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16.58	㎡	38366	분의	73.48
556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16.58	㎡	38366	분의	73.48
557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58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559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560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561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49.85	㎡	38366	분의	94.45
562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563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0.26	㎡	38366	분의	31.69
564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65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66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67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68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69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570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571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72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73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74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575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9.45	㎡	38366	분의	43.80
576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577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78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79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80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81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25	㎡	38366	분의	20.96
582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16.58	㎡	38366	분의	73.48
583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49.85	㎡	38366	분의	94.45
584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27	㎡	38366	분의	36.73
585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49.85	㎡	38366	분의	94.45
586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06.21	㎡			
587	제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335.16	㎡			
588	제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80.1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no.					대지권의 비율		
589	제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22.91 ㎡			
590	제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583.93 ㎡			
591	제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87.71 ㎡			
592	제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805.93 ㎡			
593	제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37.79 ㎡			
594	제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517.7㎡ 7층 383.67㎡ 8층 517.7㎡ 8층 273.15㎡ 9층 517.7㎡ 9층 273.15㎡ 10층 517.7㎡ 10층 273.99㎡ 11층 517.7㎡ 11층 273.99㎡ 12층 517.7㎡ 12층 273.99㎡ 13층 517.7㎡ 13층 273.99㎡ 14층 424.27㎡ 14층 368.33㎡ ㎡			

595.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20935㎡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596.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12㎡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597.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9249㎡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598.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109㎡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599.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39㎡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00.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248㎡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01.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3㎡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02.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62㎡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03.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4㎡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04.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83㎡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605.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378㎡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06.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1239㎡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07.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17㎡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08.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4833㎡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09.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523㎡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10.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37㎡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11.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44㎡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12.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5㎡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13.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220㎡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14.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138㎡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15.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188㎡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지분 전부(38366분의 13806.21)

616.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공장용지 4㎡
617. [redacted]도 [redacted]시 대 16㎡
618. [redacted]도 [redacted]시 임야 3156㎡
619. [redacted]도 [redacted]시 임야 131㎡
620. [redacted]도 [redacted]시 임야 22340㎡
621. [redacted]도 [redacted]시 임야 2876㎡
622.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임야 13190㎡
623. [redacted]도 [redacted]시 임야 74546㎡
624. [redacted]도 [redacted]시 임야 591㎡
625. [redacted]도 [redacted]시 임야 334㎡
626.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임야 17157㎡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별지3]

부동산목록 분류표

배당물건번호	별지2 부동산 목록	제한물권 내역
1 (워터파크 및 상가)	순번 1 ~ 54	1순위 근저당권 B(채권최고액 58,474,000,000원), 근저당부질권 A(29,237,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 원고(채권최고액 130,000,000,000원)
2 (콘도 시설)	순번 55 ~ 422 (아래 제3항 14개 부동산 제외)	1항과 동일
3 (콘도 시설)	순번 124, 170, 216, 247, 262, 292, 293, 324, 338, 339, 372, 400, 416, 418	1순위 근저당권 원고(채권최고액 130,000,000원)
4 (콘도 시설)	순번 423 ~ 585 (아래 제5항 17개 부동산 제외)	1항과 동일
5 (콘도 시설)	순번 428, 431, 446, 462, 473, 492, 508, 516, 517, 518, 519, 522, 524, 525, 534, 550, 570	3항과 동일
6 (호텔 시설)	순번 586 ~ 594	1순위 근저당권 원고(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2, 3순위 근저당권 피고 I(채권최고액 4,550,000,000원)
7 (대지권의 목적 외 토지)	순번 595 ~ 617	제한물권 없음
8 (2차 사업부지)	순번 618 ~ 626	1순위 근저당권 원고(채권최고액 36,400,000,000원) 1순위 근저당권 B(채권최고액 18,200,000,000원)